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I. 서설

최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단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물려 이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 단체들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이들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기부금도 일정 부분 공제대상이 된다.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해당 단체들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적·공익적 기능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고 일반복지(general welfare)가 증대되므로, 사실상 일반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 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법정, 특례, 지정의 3단계였던 기부금 단체별 소득공제제도를 올해부터 법정, 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은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해외교민지원 및 한국홍보단체와 공인된 국제기구 등 해외기부에 대한 공제도 인정하기로 하였다.¹⁾

아래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미국연방세법상 자선기부금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관해서는 (i)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적합성, (ii) 완결된 증여(completed gift)로



1)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참조.

서의 기부금 또는 기부 자산의 양도, (iii) 당해 연도 또는 이월되는 공제 대상 금액의 범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²⁾ 아래에서는 미국 기부금제도의 연혁과 함께 이들 각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미국 기부금 과세제도의 연혁

미국의 경우 1917년부터 종교기관, 자선단체, 교육기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납세자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의 공제를 허용하여 왔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및 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이나 대학, 기타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입법자들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미국 하원이 1938년 세법에 대하여 제출한 보고서(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n the Revenue Act of 1938)에 의하면 기부금이나 기부자산에 대한 공제로 인한 정부 세수의 감소는, 공적 자금(public fund)으로 충당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감소와 일반복지의 증대로써 충당된다는 이론을 제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한 입법 이후 초기

몇 년 동안에는 반대가 있었다. 이론적으로 자선단체 등에 지급된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법이 그러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할 것인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하여서는 기부금 공제에 대한 크기와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제정 당시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선행위의 대부분은 이타적인 증여의 관점에 의한 자선행위도 아니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논쟁에 의하여 입법상 보완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1917년 당시 단지 두 문장에 불과했던 법 규정은 한층 복잡하게 되었다.

III.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지급 대상 단체

미국연방세법상 비과세단체(tax exempt organization)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나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로 구분된다. 비영리단체는 각 주(state)에서 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not-for-profit corporation)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



- 2)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에 관하여는 IRC §17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소득세 공제에 관하여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참고로 IRC §2055와 IRC §2522에서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공제가 규정되어 있다.
- 3)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비과세단체들은 미국세법 §501(c)(3)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 모두에 대한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춤형 법제정보

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에서의 ‘비영리’는 미국연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며, 비영리단체가 미국연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연방세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모든 비영리단체나 비과세단체가 자선단체인 것도 아니다. IRC §501(c)는 비과세단체를 2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선단체는 이 유형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⁴⁾

IRC §501(c)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⁵⁾ IRC §170(c)에서는 IRC §501(c)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의 유형 중 4가지 유형을 포함한 다음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만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i) 미연방합중국(The United States), 콜롬비아 자치구(District of Columbia), 주(state)나 주의 정치적 하부단체(political subdivision)⁶⁾
- (ii)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
- (iii) 전쟁참전용사회(war veterans posts)

- (iv) 국내 공제조직(fraternal societies)
- (v) 묘지단체(cemetery organization)

그러므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부금 지급 대상 단체가 IRC §501(c)(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IRC §170(c)(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단체, 상공회의소, 사교클럽 등은 IRC §501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나, 그들에 대한 증여는 IRC §170에 의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⁷⁾ IRC §501(c)(3)과 §170(c)(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하여 비과세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i)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것
- (ii)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될 것
- (iii) 사익(private inurement)을 위하지 아니할 것
- (iv) 실질적인 로비활동(lobbying)을 하지 아니할 것



- 4) 그러나 2000년 현재 1,700,000여 비과세단체 중 1,000,000여 단체가 IRC §501(c)(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선단체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IRC §115에 의하여 주 정부(state government)와 그 관련단체들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 5) IRC §501(c)에서 28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고, IRC §§501(d), (e), (f), (k), (n)에서 5가지 단체 유형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6) 단 해당 증여는 반드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인디언 자치구의 행정기관은 주(state)로 본다(IRC § 7871). 이 기준을 충족하는 증여에는 공원, 도로, 박물관, 공동묘지 등에 대한 기부가 있다(Revenue Ruling 81-307, 1981-2 CB 87; Revenue Ruling 77-283, 1977-2 CB 72; Revenue Ruling 73-297, 1973-2 CB 67c 참조).
- 7) 그러나 해당 지급금액은 IRC §162에 의하여 사업비용으로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있다. 또한 이들 단체가 §17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후원을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후원자는 해당 활동을 별도의 자선 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해당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Revenue Ruling 54-243, 1954-1 CB 92 참조.

(v)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여기에 다시 범규상 설립기준(organizational test)과 운용기준(operational test)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하위요건이 요구된다.

- (i) 설립과 운용 목적의 배타성 요건(exclusivity requirement)
- (ii) 목적의 비과세성 요건(exempt purpose requirement)
- (iii) 절차적 요건(procedural rules requirement)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추가되었다.

- (i) 해당 기업은 공익을 제공하여야 함.
- (ii) 해당 기업은 기존에 형성된 공공 정책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iii) 해당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인의 형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기부금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단기간의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금(fund)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인 설립에는 많은 서류작업과 비용이 들어가는 데 반하여 기금은 독립된 은행계좌 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므로 연간 기부금 수령액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더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IRC §170(c)(2)에서는 해당 단체들이 미국이나 미국령 내에서 설립되거나 미국법이나 주법, 콜롬비아 자치구의 법, 미국령의 법에 의하여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 내 소득을 가진 외국 자선단체는 미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외국 자선 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국내 단체들에게는 해석에 있어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만약 미국 내 사업장이 외국 기업의 도관(conduit)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외국 기업이 진정한 수령인이 되고, 따라서 미국 내 사업장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해당 외국 자선단체가 고유 재량을 가진 미국 내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⁸⁾

또한 법인이 자선 신탁, 기금, 재단 등의 '비법인 비과세 단체(non-corporate tax-exempt entity)'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미국 또는 미국령 내에서 사용되는 때에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법인'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해당 금액이 미국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8) Bilingual Montessori School v. Commissioner, 75 TC 480(1980).

IV.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일반적으로 IRC §170조에 의한 자선 목적의 양도는 (i) 양수인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ii)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기부(contribution)'여야 하며, (iii) 일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iv) 현금이나 요건을 갖춘 자산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v) 기타 기준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선 목적에 의한 지급은 납세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일정 비율을, 또는 이연되는 경우에는 이연되는 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미국 연방세법에서 개인의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대상이므로 납세자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⁹⁾

여기서 살펴볼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해당 기부금의 양도가 증여(gift)로서 완결(completion)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완결성의 문제는 기부를 하는 자의 회계처리방식(accounting method)과 관련이 있으며, 증여에

있어서는 해당 양도와 기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양도와의 구분이 문제된다.

1. 회계처리방식

일반적으로 자선기부금은 현금주의(cash method)에 의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즉 납세자가 사실상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상태로는 공제 받지 못한다.¹⁰⁾ 이는 발생주의(accrual)를 따르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다음 과세연도의 세 번째 달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¹¹⁾

또한 기부금의 지급(payment)은 도달(delivery)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에 대한 현재 이익(present interest)의 이전을 의미하며, 미래 이익(future interest)의 양도는 모든 개입 가능한 이익이 사라지거나 기부자 이외의 자 또는 기부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이익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 지급된 것으로



9) 미국연방세법상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라 함은 납세자의 신고지위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공제금액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표준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는 의료비, 주세금(state tax) 납부액, 이자지급액, 기부금, 재해 또는 도난·손실액, 기타 항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이 표준공제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급'은 재화에 대한 지배권을 수령자에게 양도한 후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도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Pauley v. US, 459 F2d 624 참조.

11) IRC §170(c)(2).

처리되지 않는다.¹²⁾ 예를 들어 자선기부금은 종종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부금 수령자의 상태, 기부계획에 대한 공식적 승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증여가 특정 행위의 수행상태나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기부된 자산에 대한 자선단체의 지분이 특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날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¹³⁾ 조건부 증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된 당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된 때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¹⁴⁾ 공제대상이 된 기부금이 다시 기부자에게 반환된 경우, 이전에 이루어진 공제로 인하여 세무상 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기부자의 총소득 금액에 포함된다.¹⁵⁾

기부자가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은행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시기가 아닌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공제할 수 있

다.¹⁶⁾ 즉 일반적으로 대출금으로 기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때가 아닌 기부금이 지급된 때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납세자가 해당 자선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현금이나 자산의 도달이 없이는 공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납세자는 용역의 가치, 수월, 방송시간, 광고 공간 그리고 기타 보상되지 않은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공제할 수 없다.¹⁷⁾

2.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있어서의 증여의 요건

1960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증여를 ‘사심 없는 관대함’(detached and disinterested generosity)에 의하여 이루어진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⁸⁾ 또한 법원은 해당 양도의 주된(primary), 즉 지배적인(dominant) 목적을 양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양도 중 70%는 대가성을 가지고 30%만이 기부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해당 양도는 모두 대가의 성



12) IRC §170(a)(3). Treasury Regulation(이하 ‘Treas. Reg.’이라 한다) §1.170A-1(b).

13) Reg. §1.170A-1(e).

14) Owens v. Commissioner, 41 TCM(CCH) 1312(1981).

15) Alice Phelan Sullivan Corp. v. Commissioner, 381 F2d 399(Ct. Cl. 1967).

16) Revenue Ruling 78-38, 1978-1 CB 67.

17) Reg. §1.170A-1(g).

18) Commissioner v. Duberstein, 363 US 278(1960).

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선기부금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양자택일적 기준(all-or-nothing approach)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의 목적이 다른목적과 혼재할 경우 각 목적의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심 없는 관대함'에 의한 양도 부분은 자선기부금으로 취급하여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반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의한 양도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미국연방세법상 별개의 조문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양도 금액 중 대가성이 있는 금액의 비율을 밝혀 기부자에게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고지하여야 한다.¹⁹⁾ 예를 들어 기부자가 자선 연회 입장료로 \$250를 지급한 경우, 이 금액에서 식사나 기타 여흥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려야 한다.²⁰⁾

유니폼 비용이나 대중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등 자선활동 수행에 있어 발생한 비용 중 보상되지 않은 부분도 자선 목적의 증여로 처리한다.²¹⁾ 기부 대상 단체의 협의회나 회의 비용에 대하여 대표자는 그 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고, 해당 모임

을 위한 사항들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자신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식사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여행경비는 개인적 유희이나 여가, 휴가로서의 성격이 없는 경우에만 자선기부금으로 공제될 수 있다.²³⁾ 또한 해당 단체의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가 해당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²⁴⁾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현금이 아닌 혜택을 대가로서 인정할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나, 이에 대하여 미국연방세법은 안전조항(safe harbor rule)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자선단체로 하여금 현금 기부자들이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부요청서(solicitation)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⁵⁾

- (i) 기부자에게 부여된 모든 혜택의 공정시장 가치가 \$50 또는 기부금의 2%를 넘지 않을 것
- (ii) a. 각 기부금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b. 기부자에게 제공된 유일한 혜택이 자선 단체의 명칭이 새겨진 책갈피, 달력, 열



19) IRC §6515.

20)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부금 수령단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21) Treas. Reg. §1.170A-1(g).

22) Revenue Ruling 58-240, 1958-1 CB 141.

23) RC §170(j).

24) Churukian v. Commissioner, 40 TCM(CCH) 475(1980) 참조.

25) Revenue Procedure 90-12, 1990-1 CB 471, §3.01.

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범위가 납세자의 기부금 표준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부금은 향후 5년 간 이월된다.³⁰⁾

법인의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제한은 개인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간단하다. 법인은 과세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³¹⁾ 제한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이후 5년까지 이월된다.³²⁾ 개인의 경우와 달리 법인의 경우 제한이 기부금 수령자에 따라 상이하지 않으나, 법인이 법인 이외의 단체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증여가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VI. 결어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교법적 접근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일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의 제도를 더욱 잘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는 미국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한국의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한 지침에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일부 기부금 비리 파문으로 복지단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각종 단체들은 지난 연말 모금액 감소로 사업을 꾸려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부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복지단체들은 앞으로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엇보다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 해 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30) IRC §170(d)(1); Reg. §1.170A-10(b).

31) IRC §170(b)(2)(A), §170(b)(2)(C). 이 경우 과세소득은 자선 목적의 증여에 대한 공제, 배당, 기부금이 지급된 해로 전년 이월된 순영업손실이나 자본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1982년 이전 과세연도에서는 과세소득의 5%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였다.

32) IRC §170(d)(2).